2020년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20. 4. 2.(목요일), 10:3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최현용, 박정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7건(안건번호 제2020-7408호~7491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1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20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2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4,416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12217호~16632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20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2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4,416개의 URL 정보는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음. 제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두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함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음은 제1호 안건인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다운로드 링크 주소, 7쪽의 게시물 내용, 8쪽의 저

작물명, 출판사명, 10쪽의 게시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비식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은 비공개해야 함.

- D 위원 :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다운로드 링크 주소, 게시물 내용, 출판사명, 게시자명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5쪽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D, C, B, A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91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127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08호~7415호는 민원인 3인이 신고한 건임. 해당 안건은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총 10건임.
  방송 '◑◑◑ ◑◑', 음악 '◑◑'(◑◑: ◑◑◑◑◑), 출판저작물 '◑◑◑ ◑◑◑ ◑◑◑', '◑◑ ◑◑', '◑◑◑ ◑◑', '◑◑ ◑◑◑◑', '◑◑◑ ◑◑◑'로, 총 8개 저작물임.
  안건번호 제2020-7408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총 1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 방송프로그램 '◑◑◑ ◑◑◑'영상저작물을 직접 전송하였음.
  안건번호 제2020-740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안건으로, 총 1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의

음악 저작물 '◑◑'을 포함하여 '◑◑ ◑◑◑◑◑ ◑◑ ◑◑◑ ◑◑ ◑ ◑◑◑ ◑◑◑' 음원을 MP3 파일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7410호~7415호는 저작권자인 민원인이 신고한 총 8개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물 '◑◑◑ ◑◑◑ ◑◑◑', '◑◑ ◑◑', '◑◑◑', '♣♣♣ ♣♣', '♣♣ ♣♣♣♣', '♣♣ ♣ ♣♣♣'를 gif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각각 제공함. 해당 6개의 출판물은 우리나라 출판사 '♣♣♣ ♣♣♣♣♣♣♣'가 출간한 웹소설임. ♣♣♣ ♣♣♣, ♣♣♣♣♣♣ 등에서 대여 또는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1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15호는 불법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임. 이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고려하면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 불법복제물 전송으로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1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16호~7491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7429호는 2020. 1. 8.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5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mkv 파일에 한글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3. 17.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조조 래빗'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40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아직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한 영화로, mkv 파일에 한글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VOD 서비스 제공 전인데도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VOD 서비스 시작 전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자체자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번역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2차저적저작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음악 '사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70호는 2020. 1. 17.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에서 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예선곡 베스트'에 수록되어 있으며, 작사, 작곡 모두 나훈아임. '미스터트롯(320k)'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고, 약 32곡 다운로드 가능함. 다른 음원 정보로는 가수 임영웅의 '바램' 음원 파일임. 원곡 실연자는 '노사연'임.

- B 위원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인 TV조선과 출연자 사이에 체결된 출연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이 발견됨. 구체적으로는 출연료 회당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예선 탈락한 출연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 등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은 저작인접권, 즉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자의 권리를 음반제작자인 방송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A 위원 : 그렇지 않음. 출연자들은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이미 신탁단체 회원임. 자신의 권리를 신탁협회에 신탁한 회원이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 시 그 권리를 제작자에게 양도하면 법률에 저촉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의 모든 권리는 협회 가입 시 협회에 양도됨. 제작자에 권리를 또다시 양도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양도에 해당함.

- C 위원 :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영화 제작사가 음악감독 개인에게 창작곡을 사용 허락받거나 양도받는 것은 이중양도이므로 불공정함.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음저협이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며, 음악감독은 저작권 신탁단체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 저작권을 이용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A 위원 : 영화에 삽입되는 음악(OST)은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등록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런데 음반제작자가 방송사일 때는 가수가 신탁회원이라면 권리의 양도가 불가능함. 통상적으로는 음반 발매일 6개월간의 수익은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연자가 신탁단체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 B 위원 : 포괄적 신탁약관이 문제임. 조건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 해당 안건의 음반제작자는 TV조선임. 우리나라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따르면, 실연자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방송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 실연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실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서 아쉬운 점이 있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적용 범위는 영상물이어야 하는데, 해당 안건 저작물은 영상물에서 음악만 추출한 것임. 추출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D 위원 : 특례규정에 따라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됨.

- A 위원 : 실황녹음이라면 영상저작물에서 추출한 음악저작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됨.

- D 위원 :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기보다는 2차적 사용으로 볼 것임.

- A 위원 : 실연자의 권리는 가수 '영탁'에게 있음. 다만 음반을 발매할 때 음반제작자와 가수는 개런티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됨. 본건의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개런티가 10만원임. 수익을 따져보았을 때 해당 약정이 불공정해 보임. 실연자가 별도의 개런티를 받는 조건으로 발매 후 6개월간은 음원에 대한 수익은 음반제작자에게 귀속되고, 기간 이후에는 신탁단체를 통해 실연자에게 배분됨.

- C 위원 : 그러한 관행이 실연자로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것인지, 음반 비용 등 용역의 대가인지 불분명함.

- D 위원 : 다툼이 있다면 매절계약과 같이 주고받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해야 함.

- A 위원 : 하지만 해당 안건은 신탁단체를 통한 수익 배분 문제가 존재함. 신탁단체 회원가입 시 자신의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회원이 위탁한 권리는 협회가 행사함.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즉, 저작재산권에 대한 결정은 신탁단체가 하기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음반 발매 전 음반제작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

우와 음반 발매 후 신탁단체가 계약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겹쳐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관행상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임. 대신 작사가, 작곡가, 가수는 제작자로부터 실연자에 대한 권리의 일종으로 개런티를 받음.

- D 위원 : 미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실연자들은 노조의 집단계약(collective agreement)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 C 위원 : 미국도 녹음물(sound-recording)의 수익을 주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각 배분하고 있음. 하지만 그 권리를 레코드 레이블에 한정할 것인지, 레코드 레이블과 아티스트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다툼이 있음.

- A 위원 : 최근 음반사들이 음반에 대한 특례규정을 요구하고 있음.

- D 위원 :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간명화할 필요가 있는데, 실연자 등 권리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본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니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작은 아씨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7484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제공한 사안임. 2020. 3. 31. 기준으로 상영 중임. mkv 파일에 한글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2020. 3. 11.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7416호~749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20-7416호~7491호는 무단 복제물로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7416호~749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7408호~749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까지는「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217호~16632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선언

o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4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9.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